본 자료는 2000. 8월2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**보도자료** **산업자원부 공보관실**	작성과	에너지안전과
		담당자	김 열 과 장 이상우서기관
		전 화	500 - 2382
하이텔·천리안 : go epic, 나우누리 : go mocie, 인터넷 : www.mocie.go.kr>			

고압가스배관 매설시 시공감리 받아야

- 산업자원부, 고압가스법 개정 -

○ 내년부터 수소제조업체나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를 제조·사용하는 자가 공단지역 도로등에 고압가스배관을 매설할 때에는

- 허가관청의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고, 배관도면도 작성해 보존해야 하며
- 또한 고압가스제조를 시작하거나 휴지 또는 폐지할 때에는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.

<업체(시설)현황>

(단위 : 시설수)

계	특정제조	일반제조	냉동제조	저장및판매
7,998	97	187	4,228	3,486

※ 특정제조 : 100톤이상의 석유화학 프랜트 등, 일반제조 : 수소, 산소 등 산업용 가스제조시설, 냉동제조 : 대형건물의 냉방시설임.

○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○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시·군·구청장이 시·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고압가스제조업에 대한 허가 및 관리감독권을 시·군·구청장에게 완전히 이양키로 했다.

<참고자료>

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

□ 개정사유

○ 감사원, 규제개혁위 등의 요청 및 결정내용 반영

□ 주요내용

○ 고압가스제조허가 및 관련권한의 이양(시·도지사 → 시·군·구청장)

※ 지방이양추진위(위원장 행자부차관)에서 결정(2000. 4)

○ 고압가스제조업의 개시·휴지·폐지 신고제 부활

※ 지자체 요구사항을 법제처와 협의 결정(잔가스 방치 등에 따른 사고 위험을 방지)

○ 공단지역 도로등에 고압가스배관 매설시 시공감리 의무 부여

※ 감사원에서 울산공단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

○ 가스제조업 신고수리 및 검사기관 지정시 수수료 징수

※ 행자부 요청내용 일부반영

○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에 규정

※ 규제개혁위에서 결정

□ 추진일정

○ 관계기관 의견 문의 및 입법예고 : 8월중

○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 : 9월중

○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제출 : 10월중